

() 예비인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예비 인증 신청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담 당 자	성 명		부 서		직 위	
		Tel		Fax		E-mail	
예비인증대상							
신 청 대 상	지역(시설)명						
	소 재 지						
	면적(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의4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자	→ 접수·확인 처 리 기 관 (인증기관)	→ 심사·심의 처 리 기 관 (인증기관)	→ 기안·결재 처 리 기 관 (인증기관)	→ 결과통보 예비인증서 교부

자체평가서 작성방법

1. 일반사항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자를 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통합평가

2명 이상의 신청자에 따른 인증대상 도시사업이 하나의 도시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되는 경우 심사대상 도시별 자체평가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체평가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작성방법

가. 자체평가서 구성

자체평가서는 분야별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나. 자체평가서 분량

자체평가서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A4를 기준으로 하며, 근거 자료(부록, 첨부)를 포함하며 분량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 자체평가서 제출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 초안의 부수는 원본 2부이며 신청자도 1부 이상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자체평가서의 보완

신청자는 인증기관이 서류심사 이전에 자체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심사진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자체평가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문헌 또는 그 밖의 시청각 기록 자료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2) 현장조사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대상도시의 무장애화 수준 및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예측·분석할 수 있도록 대상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바. 자료의 구성

가급적 도면, 계산서,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사. 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